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안 제11조) 및 조문 간 인용 오기 사항 개정(안 제14조)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기간: 2026. 7월 예정(13일간)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자구 수정 및 실질적 변경내용 없음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심의회 개최일: 2026. 8(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예정)

과주시 조례 제 호

과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 940-3703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최 선 희
	통합돌봄팀장	백 효 진
	담 당 자	김 은 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u>통합지원 사업</u> 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 <u>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u>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u>제7조제2항</u> 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 ----- ----- <u>제6조제2항</u> ----- ----- ----- ----- ----- ----- -----.
② 시장은 <u>제6조</u> 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u>제5조</u>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11.11 조례 제23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이 외에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업부

서 및 민간 제공기관,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사업
5.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6.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7.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시·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과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은 「과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시사장 등 시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 대표자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에 「과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2025. 11. 11. 조례 제2318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담 조직의 설치, 사전조사, 사업 설명회, 간담회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파 주 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회신[「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 복지정책과-19467(2026. 7. 21.)호와 관련합니다.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심사의견
복지정책과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규제 해당사항 없음

붙임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서 1부. 끝.

예산법무과장 명

주무관	원성원	규제개혁통계	김선정	예산법무과장	2026. 7. 22.	이재현
합조자						
시행	예산법무과-12415	(2026. 7. 22.)	접수	복지정책과-19598	(2026. 7. 22.)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들봉)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59	/ ksw8732@korea.kr	/ 비공개(5)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u>자치법규명</u>	『 <u>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u> 』 (일부개정)		
2. <u>소관부서</u>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 당	팀장 <u>백효진</u>	담당자 <u>김은영</u>
3. <u>관련법령 등</u>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u>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0조		
4. <u>주요골자</u>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명시(안 제11조) 및 조문 간 인용 오기 사항 개정(안 제14조)		
5. <u>심사의견</u>	○ <u>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u> - 『<u>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u>』 일부개정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u>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의 위임 근거 조문을 명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u>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6. <u>심사담당자</u>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6-34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행정7급 윤수진
주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복지7급 김은영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6. 7. 23.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파 주 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파주034)

1. 복지정책과-19468(2026.07.21)호와 관련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애 따른 자치법규의 제명 및 문구 등의 단순 변경애 해당하므로,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가 족 과 장 김 영 미

여성정책전문위원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2025. 7. 23.
원	원봉영	조명자	김영미
참조자			
시행 여성가족과-14699	(2025. 7. 23.)	접수 복지정책과-19763	(2025. 7. 2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0, 복지동 1층 여성가족과 (아동동)		/ http://www.seju.go.kr
전화번호 031-940-8684	팩스번호 031-940-4419	/ mvilhas@korea.kr	/ 비공개(6)